강원관광대학 교직원보수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대학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 3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"보수"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 - ② "봉급"이라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(계급별 직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을 말한다.
 - ③ "수당"이라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.
 - ④ "승급"이라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 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⑤ "보수의 일할계산" 이라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⑥ "초임금" 이라함은 임용될 때 최초로 확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.
 - ⑦ 계약직의 보수는 계약 당시 합의된 금액을 말한다.

제 2 장 보 수

- 제 4 조 (봉급) 교직원의 봉급은 공무원 봉급규정에 따른다.
- 제 5 조 (직급 및 호봉)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 6 조 (직급간의 균형) 봉급을 제외한 직급간에 차등을 두는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 7 조 (보수의 약정) 본 대학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임용시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제 8 조 (초임호봉의 확정) ①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. ② 초임호봉 확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- 제 9 조 (승급)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 - ② 계약직은 재계약 시 업무능력이나, 성실도, 학교발전의 기여도에 의해 조정 계약한다.
- 제 10 조 (승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.
 - 1. 연구출장 · 연구년기간, 단, 승급의 시기는 복귀 후로 한다.
 - 2.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
 - 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
 - 4.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
- 제 11 조 (특별승급)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할 수 있다.
- 제 12 조 (근속가봉) ① 교원이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자에 대하여는 근속 가봉으로 지급하되,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.
 - ② 일반직원이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 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 13 조 (교원연구비) 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급별로 교원연구 보조비를 지급한다.

제 3 장 보 수 지 급

- 제 14 조 (보수의 계산)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된 달의해당 보수금액을 전액 지급한다.
 - 1.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된 경우 (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또는 1일자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.)
 - 2.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

- 제 15 조 (보수지급일) 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.
 -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 16 조 (결근기간중의 보수) ① 병가 이외의 사사로운 일로 30일 이내 유계 결근직원에 대하여는 유계 결근 일수가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 - ② 질병으로 인한 60일 이내의 병가 결근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
 - ③ 3일 이상의 무계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④ 공식출장이 아닌 학술대회 참석, 교육기관 입교등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. 단,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
- 제 17 조 (승급 또는 승진자의 보수) 승급 또는 승진자의 보수는 승급 또는 승진된 발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제 18 조 (겸직자의 보수) ①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,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는 많은 쪽의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.
 - ② 보직의 경우도 전항의 규정과 같다.
- 제 19 조 (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) 해직된 교직원이 잔무처리를 위한 집무를 계속하였을 때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직 최종월의 보수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 20 조 (정기승급) ① 정기 승급은 직원의 인격, 능력,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매년 3월 1일과 7월 1일에 실시한다.
 - ② 각 급별 최고 호봉에 달한 자는 매 승급 시기마다 정기 승급 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고 호봉간 차액의 ½에 해당 액의 근속 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 21 조 (승진시의 호봉확정) ① 일반직, 기능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 안에서 호봉을 확정한다.
 - ② 교직원의 승진시의 호봉 확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.
- ③ 직종을 달리하는 승진의 경우 승진된 직급의 봉급이 승진전의 봉급(조건부 또는 촉탁의 봉급은 제외한다.)에 미달된 경우에는 승진 전의 봉급을 초과하는 최소액 상 당

호봉을 확정한다.

- 제 22 조 (복직자의 초임금) 퇴직 또는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한 경우의 초임금은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직급 호봉(조건부 또는 촉탁 기간의 호봉은 제외함)을 초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23 조 (보수지급방법)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.
 - ② 보수는 본인이 제출한 예금구좌로 지급한다.
- 제 24 조 (보수의 조정) 보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하여 조정한다.

제 4 장 수 당

- 제 25 조 (수당의 지급) 교직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 26 조 (수당의 구분)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지급한다.
 - 1. 상여수당
 - 가. 기말상여수당
 - 나. 특별상여수당
 - 다. 정근수당
 - 라. 장기근속수당
 - 2. 가계보전수당
 - 가. 가족수당

- 나. 자녀학비보조수당
- 3. 초과근무수당
 - 가. 시간외근무수당
 - 나. 당직수당
 - 다.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
 - 라. 책임관리수당
- 4. 특수근무수당
 - 가. 보직수당
 - 나. 위험수당
 - 다. 출납수당
 - 라. 비서수당
 - 마. 면허 또는 전산업무수당
 - 바. 관리감독수당
- 제 27 조 (기말상여수당)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월, 6월, 9월,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기말상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단 기말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1일 이전에 면직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② 기말상여수당 지급액은 보직수당, 가족수당, 초과 강사료를 제외한 기말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봉급액으로 하되 기말수당 지급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단, 분진학원 및 학원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재직기간은 본 대학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제 28 조 (특별상여수당)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석과 구정에 그 달이 속한 보수 지급일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 29 조 (정근수당)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보직수당, 가족수당 및 초과강사료를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지급률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정근수당은 정근수당 지급 월 1일 현재 전월 1일부터 계속 재직한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분진학원 및 학원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 재직기간은 본 대학 재직기간으로간주한다.
- 제 30 조 (장기근속수당) ①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별도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.
 - 정직, 감봉,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도로 정한

비율에 따라 장기근속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

- 제 31 조 (가족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 - 1. 배우자
 - 2.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출가 여직원은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)
 - 3. 18세 미만의 직계비속
 - 4.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의 형제자매(여직원의 경우 출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함)
 - ② 제①항에서 부양 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또는 교직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배우자가 타 기관에 서 동일인의 가족 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.
- 제 32 조 (자녀학비보조수당) ① 중학교,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기분은 2월 제 2기분은 5월 제 3기분은 8월 제 4기분은 11월의 보수 지급일에 따로 정하는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단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 - 1.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는 경우
 - 2.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을 경우
 - ② 제①항에 "교직원"이라 함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월 1일 현재 재직하는 교직원 (휴직자를 제외한다.)을 말하며 "자녀"라 함은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를 "학비"라 함은 입학금,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.
- 제 33 조 (초과근무수당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시간외근무수당 :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자
 - 2. 당직수당 : 당직명령을 받고 숙직 및 일직근무를 하는 자
 - 3.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: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또는 주 간교체 근무자로 야간 근무를 하는 자와 휴일에 근무하는 자.
 - 4. 책임관리수당: 업무상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(단, 책임관리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,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)
- 제 34 조 (특수근무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보직수당 : 직제 규정에 명시된, 처 부, 실 및 과(학과), 부속기관, 계의 책임자
- 2. 위험수당 : 작업상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3. 출납수당 :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자
- 4. 비서수당 : 비서직을 담당하는 자
- 5. 면허 또는 전산 및 사서 업무수당 : 고도의 숙련과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6. 관리 감독수당 : 업무상 보전과 보안을 요하는 업무 부서의 책임자
- ② 수당지급대상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타인이 대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한다. 단, 공무로 인한 여행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 35 조 (겸임교수수당) ① 겸임교수에게는 겸임교수 수당을 지급한다.
 - ② 지급액은 학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36 조 (기타수당)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곤란성 또는 책임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전항에 의한 수당은 월정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.

제 5 장 퇴 직 금

제 37 조 (퇴직금)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연금 관리공단에 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한다. 단,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비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준한다.

제 6 장 후생복지비

- 제 38 조 (정액급식비)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 39 조 (가계지원비)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40 조 (효도휴가비)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도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보 칙

- 제 41 조 (강사료) ① 강사료는 매년 책정된 금액과 초과한 담당 강의 시간에 따라 계산 하여 매월 해당되는 월에만 지급한다.
 - ② 강사료에 대하여는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 42 조 (착오의 정정) ① 호봉책정과 보수지불시의 계산착오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된 때는 해당 월을 기점으로 정산하여야 한다.
 - ② 본인의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과다하게 보수가 지급된 때는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.
- 제 43 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, 공무원 수당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제 1 조 (시행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책정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책정 지급된 것으로 본다.